

증인 신청서

사건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서울고법 민사 제2부 나, 박홍우 부장판사)
원고

피고 학교법인 성균관 대학,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이사장 권이혁

위 당사자간 교수지위확인 사건에(이하 ‘이사건’) 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303조 (증인의 의무)와 제308조 (증인신문의 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증인신문을 신청합니다.

1. 증인

이름: 이광범, 생년월일: 1959. 1. 18

주소: 사법정책실장, 서울시 서초구 서초로 219 137-750

2. 증인신문 청구의 요건이 되는 사실

가. 이사건 핵심 쟁점인 교수지위확인 청구 근거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판례(1977. 9. 28. 선고 77 다 300)를 일관성 있게 주장하였으나, 지난 3 월 9 일자 대법원 판결들은(2003 다 52647, 2003 재다 262, 양승태 주심) 77 다 300 언급을 회피하며 교수지위확인 청구를 부인하였기에,

나. 77 다 300 판례에서의, (재임용 기대권을 인정하는)사립학교법 해석이 유일한 합법 유효 해석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이용훈 앞으로 2006년 6 월 9 일 공개질의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다. 원고는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2006년 7 월 10 일 수령하였는바, 사법정책실장(이광범) 이름으로 보내온 그 답변서 내용에 의하면, 공개 질의들이 변조되어 구하고자 하는 답변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증인 신청서

사건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서울고법 민사 제2부 나, 박홍우 부장판사)
원고

피고 학교법인 성균관 대학,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이사장 권이혁

위 당사자간 교수지위확인 사건에(이하 ‘이사건’) 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303조 (증인의 의무)와 제308조 (증인신문의 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증인신문을 신청합니다.

1. 증인

이름: 이용훈, 생년월일: 1942. 12. 26.

주소: 대법원장, 서울시 서초구 서초로 219 137-750

2. 증인신문 청구의 요건이 되는 사실

가. 이사건 핵심 쟁점인 교수지위확인 청구 근거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판례(1977. 9. 28. 선고 77 다 300)를 일관성 있게 주장하였으나, 지난 3 월 9 일자 대법원 판결들은(2003 다 52647, 2003 재다 262, 양승태 주심) 77 다 300 언급을 회피하며 교수지위확인 청구를 부인하였기에,

나. 77 다 300 판례에서의, (재임용 기대권을 인정하는)사립학교법 해석이 유일한 합법 유효 해석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이용훈 앞으로 2006 년 6 월 9 일 공개질의서를 제출 하였습니다.(주: 7 월 6 일자, 박시환 주심의 2005 다 16041 선고도 교수지위확인 청구 부인함)

다. 원고는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2006 년 7 월 10 일 수령하였는바, 사법정책실장(이광범) 이름으로 보내온 그 답변서 내용에 의하면, 공개 질의들이 변조되어 구하고자 하는 답변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